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박용갑 · 윤준병
이수진 · 김한규 · 김남근
정태호 · 진성준 · 남인순
박균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·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.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, 에너지 사용, 물 이용,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,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이용 합리화,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·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

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,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6조, 제35조 및 제47조).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줄이기”를 “줄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을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또는 제거 활동에 필요한 조치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 필요한 조치
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

물의 재이용에 필요한 조치

4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에 필요한 조치

5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6조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6조제4항”을 각각 “제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제24조제4항”을 “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“제6조제4항”을 “제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1조의8제1항, 제11조의9제2항, 제11조의10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, 대행 실적의 관리 및 기술인력

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업무

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.

3.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<u>줄이기</u>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,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줄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통합허가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통합허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</u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

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또는 제거 활동에 필요한 조치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 필요한 조치
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에 필요한 조치
4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에 필요한 조치
5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

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.

⑧·⑨ (생략)

오염물질을 감소·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
⑧ 제7항-----

- 제5항-----

-----.

⑨·⑩ (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)

제7조(허가기준 등) ① (생 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 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

제7조(허가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6조제5
항-----

-----.

③ -----

--- 제6조제5항-----
-----.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) ① -----

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9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(이하 “환경전문심사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

3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

----- 제8조제1항
-----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
-----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
-----항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6조제5항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11조의8제1항, 제11조의9제2항, 제11조의10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, 대행 실적의 관리 및 기술인력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업무

제47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<삭제>

<u>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</u> <u>2.</u> ~ <u>4.</u> (생략) ⑥ · ⑦ (생략)	<u>1.</u> ~ <u>3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